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342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김예지·강득구·용혜인
조경태·박덕흠·김상훈
김형동·유용원·백종헌
서범수·최형두·권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50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잉지급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소액이거나 소량인 경우
2. 수급자가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한 경우
3. 그 밖에 수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0조의 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를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압류”를 “압류하거나 상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잉지급분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0조(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액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50조(사회보장급여의 압류 등의 금지) -----
-----압
류하거나 상계-----.